

2008. 이슈분석 제6호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이 서울시 여성인력개발 정책에 가지는 함의

서영주  
(정책개발실장)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이 서울시 여성인력개발 정책에 가지는 함의

### 목 차

#### [개요]

1.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
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4. 서울시 여성인력개발정책 과제

[붙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대비표

## 목 차

[표 1] 연도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표 2] 서울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표 3]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사 현황

[표 4] 서울시 미취업 여성의 희망근무 형태

[표 5] 여성의 part-time 취업률

[표 6] 여성 취업자의 지위 비중 추이

[표 7] 서울시 성별 평균 임금비

[표 8] OECD 국가의 학력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표 9] 서울시 성별 대졸자 취업률

[그림 1] 서울시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그림 2] '07년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비교

[그림 3] '07년 8월 남성과 여성의 비경제활동 활동 상태

[그림 4]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그림 5] 서울시 성별 비정규직 비율

[그림 6] 학력별 남성 대비 여성 월평균 임금수준추이

[그림 7] 연령대별 임금수준 상대비교(25-29세=100), 2006년

[그림 8] 성별 연령대별 비정규직 현황

[그림 9] 성별 대졸자 취업률 차이

## [개요]

- 본 이슈분석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08.12.06)에 따라 우리나라(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목적,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법 시행이 서울시 여성인력개발 정책에 미치는 과제를 제시하였음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의 창출 및 활용을 통한 능력개발이 국가 경쟁력 우위의 핵심전략으로 인적자원개발이 국가발전의 핵심 요소임
- 이러한 사회에서는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며, 다양한 직종과 다양한 근로형태의 여성인력이 노동시장에서 활동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여성인력의 개발과 활용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고학력화에 따라 우수한 여성이 많이 양성·배출되고 있으나,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음. 특히 여성이 출산·육아기에 노동시장을 이탈한 후 다시 노동시장에 재진입 하는 M-Curve현상이나 영구히 포기하는 L-Curve 현상은 더욱 고착되고 있음
- 이러한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은 여성인력 활용을 어렵게 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취업구조를 저숙련 구조로 재편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여 여성인력의 저활용 상태를 불러왔음

- 최근 들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정책 수립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국정과제인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추진과 관련해 법적근거를 마련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제정·시행 중에 있음
  - 이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살펴봄으로써, 법의 시행이 서울시 여성인력개발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를 제시 하였음

# 1.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

##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저조

- '07년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5-64세)은 54.8%로 OECD 평균('06년 60.8%)보다 6%p 정도 낮은 수준임

[표 1] 연도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단위 : %)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OECD 평균('06)
49.9	51.4	51.9	52.7	53.4	52.8	54.0	54.4	54.8	54.8	60.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15세이상)은 '07년 51.7%로 전국평균 50.2%보다 1.5%p 높은 수준이나 '05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음

[표 2] 서울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

연도	2004	2005	2006	2007
서울	51.6	52	51.9	51.7
전국	49.9	50.1	50.3	50.2

- 그러나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사는 실질적인 경제활동참가율 보다 높게 나타나 현실과 차이를 알 수 있음

[표 3]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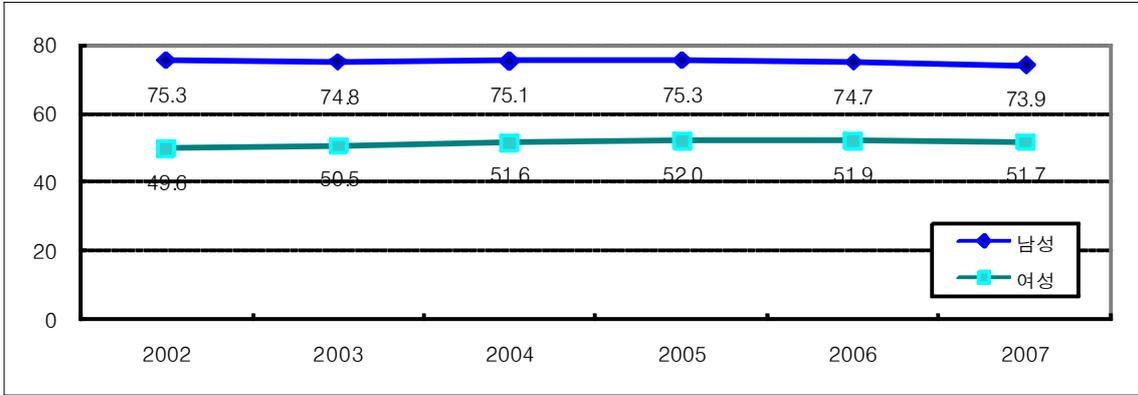
(단위 : %)

연령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참여의사	75.5	63.3	51.7	30.2	17.1

자료 : 2006년도 서울시 여성정책 수요조사

- 특히 서울시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해 보면 '07년 여성은 51.7%로 남성의 73.9%에 비해 약 22%p 정도 낮은 수준임

[그림 1] 서울시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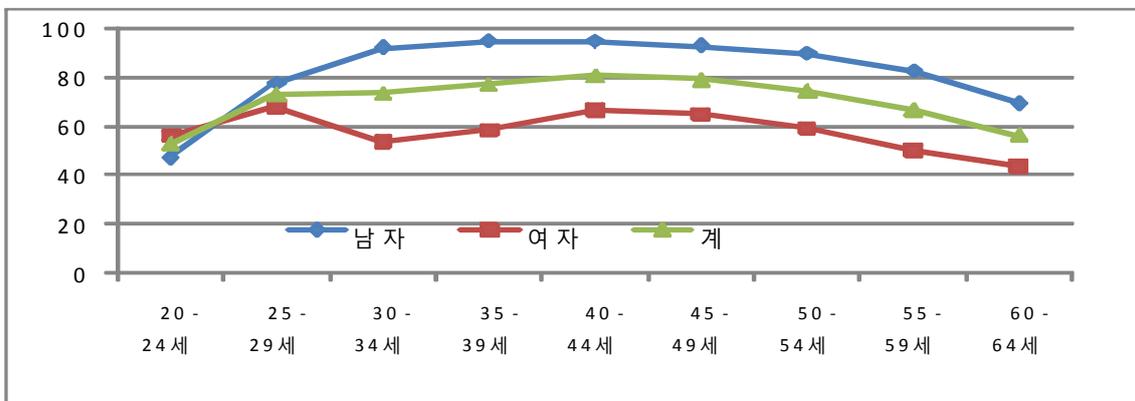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 심화

- 우리나라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해 보면 출산·육아 부담이 있는 30대 이후에서 격차가 심화되어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이 초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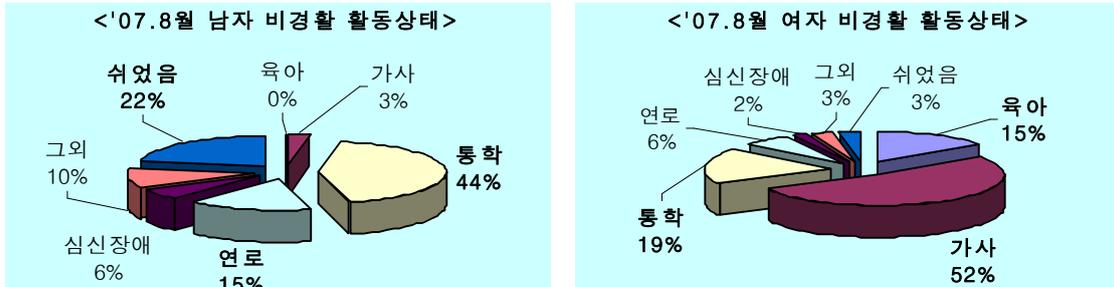
[그림 2] '07년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비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의 조사결과 여성 비경제활동 사유 중 가사·육아 비중이 약 67%에 이르고 있어 남성의 3%와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요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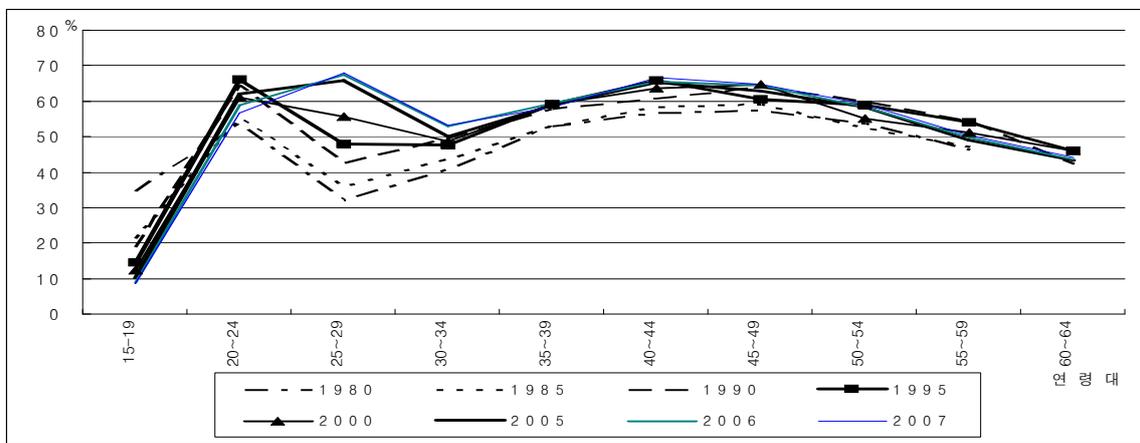
[그림 3] '07년 8월 남성과 여성의 비경제활동 활동 상태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특히 여성 근로자의 만혼·노산, 결혼으로 인한 퇴직관행 완화 등으로 인해 M자형 경력단절 곡선 저점이 25~29세에서 30~34세로 옮겨가는 추세에 있음

[그림 4]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서울시의 경우에도 미취업 여성 중 육아부담이 큰 30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part-time 선호도가 높아 full-time에 대한 부담이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4] 서울시 미취업 여성의 희망근무 형태

(단위 : %)

연령		평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직장출근	full-time	45.5	65.8	37.5	31.4	30.0	18.2
	part-time	25.5	18.8	33.0	26.3	31.7	18.2
자기사업(창업)		11.3	5.8	10.8	16.1	23.3	13.6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		5.5	2.1	6.8	10.2	5.0	4.5
어떤 형태든 무관		12.1	7.5	11.9	16.1	10.1	45.5

자료 : 2006년도 서울시 여성정책 수요조사

- 이에 반해 우리나라 여성의 part-time 취업률은 12.3%로 OECD 평균('06년 26.4%)보다 14%p 정도 낮은 수준에 있어 희망과 현실 사이의 미스매치 현상을 알 수 있음

[표 5] 여성의 part-time 취업률

(단위 : %)

국가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스웨덴	OECD평균
part-time 고용비율 ('06년)	12.3	40.9	17.8	31.9	19.0	26.4

자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5세 ~ 64세)

파트타임 고용자는 주당 30시간 이하의 임금근로를 말함

## □ 여성의 취업 질(質) 문제 지속

-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여성 취업자 중 무급가족종사자가 줄어든 대신 임금근로자가 증가하였으며, 임금근로자 중 일용직은 감소한 반면 상용직·임시직 비중은 증가 추세임

– 상용직 및 임시직 전체 중 여성비율을 보면 상용직은 전체의 30%수준에 불과하고, 임시직은 60%를 차지하여 남성보다 고용이 불안한 상태가 지속됨

※ 상용직 전체 중 여성비중(%) : 29.0('03)→30.9('05)→32.6('07)

※ 임시직 전체 중 여성비중(%) : 56.5('03)→56.9('05)→56.8('07)

[표 6] 여성 취업자의 지위 비중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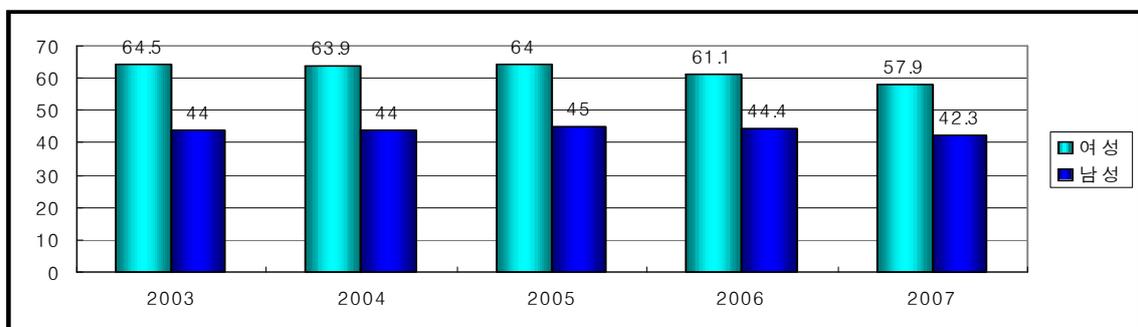
연도	여성						남성					
	임금 근로자				자영 업주	무급가족 종사자	임금 근로자				자영 업주	무급가족 종사자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2000	61.5	19.1	28.5	13.9	19.2	19.3	64.3	38.1	17.1	9.2	33.8	2.0
2003	65.6	23.2	31.0	11.4	17.8	16.7	64.7	39.6	16.7	8.4	34.0	1.3
2004	66.6	24.4	30.6	11.5	18.6	14.8	65.6	40.4	16.7	8.4	33.1	1.3
2005	67.1	25.6	30.2	11.3	19.0	14.0	66.0	41.1	16.4	8.5	32.8	1.3
2006	67.7	27.1	30.0	10.8	18.8	13.5	66.8	41.5	16.6	8.6	32.0	1.2
2007	68.8	28.7	29.9	10.2	18.5	12.7	67.7	42.6	16.4	8.7	31.1	1.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 상용직 비중을 연령별·성별로 비교하면, 20대 후반에서는 남녀간 동일수준을 보이다가 30대 이후부터 여성의 노동시장 퇴장이 본격화되면서 남성보다 급격하게 하락함

○ 서울시의 경우에도 성별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비정규직에 더 많이 분포되어 '07년 비정규직 비율이 57.9%로 취업여성 10명중 약 5.8명이 비정규직에 근무하고 있음

[그림 5] 서울시 성별 비정규직 비율



## □ 성별 임금 격차 심화

○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 비중이 높은 직종에서 남성 대비 여성의 월평균 임금이 높은 경향이 다소 나타나고 있으나, 평균 66.6%('06)로 선진국의 75~90%에 비하면 격차가 큰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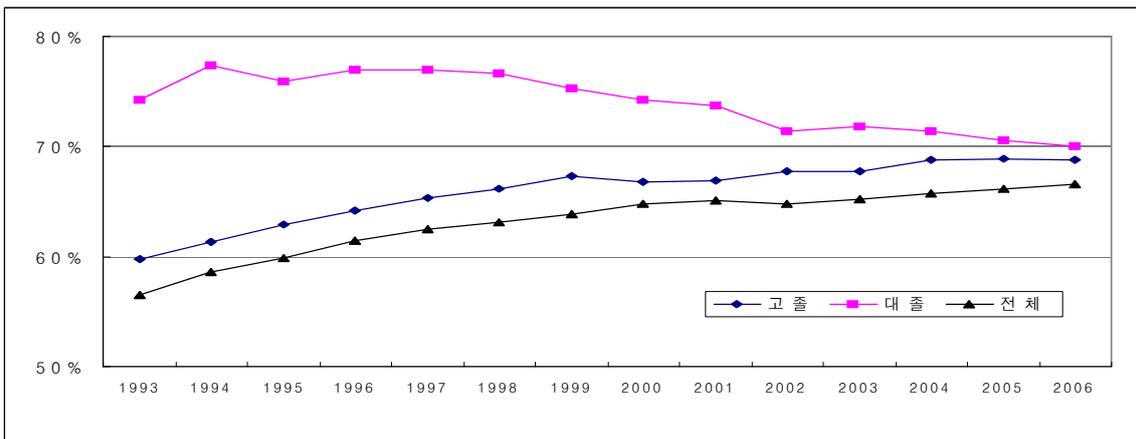
※ 남성 대비 여성 월평균 임금 수준('06년, 66.6%) : 단순노무종사자 78.3%,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81.2%, 판매종사자 75.6%, 전문가 63.7%,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61.1%, 기능원 및 관련기능 63.8%

○ 여성근로자의 남성 대비 임금 수준은 개선되고 있으나, 대졸 여성근로자의 상대적 임금은 오히려 하락 추세임

- OECD 국가 중 고소득층의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큼

※ 소득계층 상위 20%의 남녀 임금격차 (1-여성임금/남성임금) OECD 평균 20%, 우리나라 40% (최대), 그리스 5% (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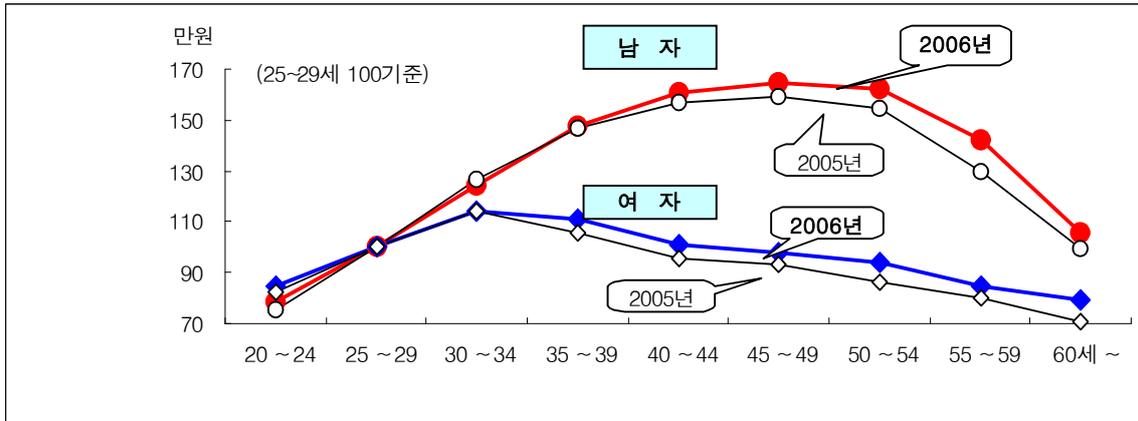
[그림 6] 학력별 남성 대비 여성 월평균 임금수준추이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 연령대별로 비교해 보면 30대 후반부터 임금격차가 현저하게 나타나는바, 이는 경력단절현상 이후 비정규직 등의 형태로 재취업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그림 7] 연령대별 임금수준 상대비교(25-29세=100), 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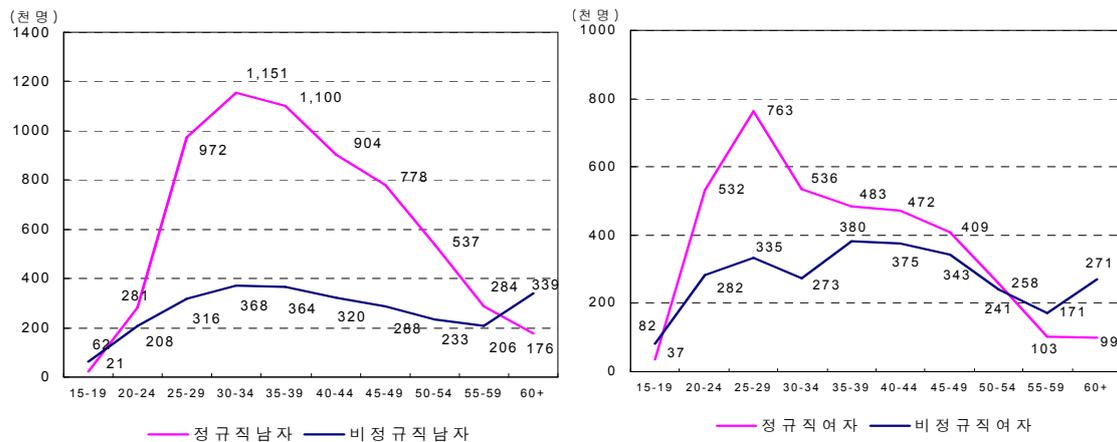
자료 : 『2006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주 : 월급여액은 “정액 및 초과급여액”기준이며 상여금 등 연간특별 급여액은 제외됨

○ 여자의 경우 정규직은 20대 후반을 정점으로 감소하지만 비정규직은 20대 후반과 30대 후반을 정점으로 하고 30대 초반을 저점으로 하는 M자 형태를 보임

※ 이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근로자수가 30대 초반에 급격히 하락하였다가 30대 후반에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려 할 때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 데서 기인함

[그림 8] 성별 연령대별 비정규직 현황



자료 : 『2006.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 서울시의 경우에도 남성대비 여성의 임금은 남성 임금의 64.1%이며, 2006년 상반기 남성의 월평균임금은 3,127,000원, 여성은 1,888,362원으로 남녀의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남

[표 7] 서울시 성별 평균 임금비

(단위 : %)

	2002	2003	2004	2005	2006
임금비	63.0	64.1	63.1	64.1	64.1
임금격차	37.0	35.9	36.9	35.9	35.9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각년도

## □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격차

-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 여성 고급인력의 사장이 심각함
  - OECD 국가에 비해 대졸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매우 저조한 현상이 나타남
  - 이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기대임금과 시장임금의 격차 등에 따라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율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표 8] OECD 국가의 학력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

구분	초졸	중고졸	대졸
OECD 여성 평균	51.0	70.4	82.3
한국 여성	59.0	56.3	60.2%

자료 : OECD, 2007 Employment Outlook (2005년 기준, 25세~65세)

- 서울시 대졸자 여성의 취업률은 '05년 66.7%에서 '06년 66.4%, '07년 65%로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임. 동기간 남성 대졸자의 취업률은 '05년 71.9%에서 '06년 73.4%, '07년 72.9%로 증가하여 성별격차가 더욱 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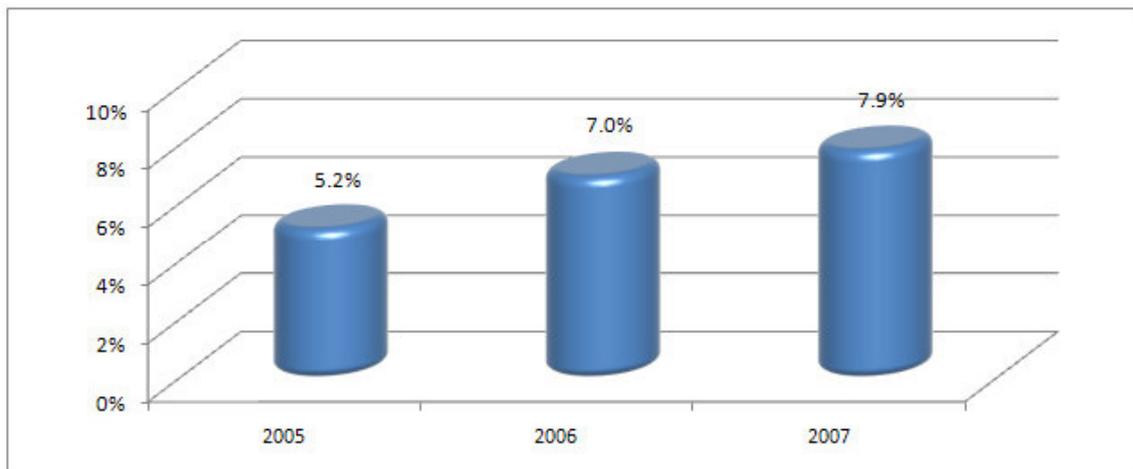
[표 9] 서울시 성별 대졸자 취업률

(단위 : %)

	2005	2006	2007
여성	66.7	66.4	65
남성	71.9	73.4	72.9
남녀 비율 차이	5.2%p	7.0%p	7.9%p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연보』

[그림 9] 성별 대졸자 취업률 차이



## 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 법 제정 추진경과

-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진흥법안」 의원발의 ('07.4.3)
-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상정('07.6.20)
-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개최 및 의결('07.11.14)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법안」으로 수정의결
-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및 법제사법위원회 송부('07.11.19)
- 법사위 법안심사 전체회의 의결('08.5.15)
- 국회본회의 의결('08.5.16)
- 공포('08.6.5)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률 시행('08.12.6)

### □ 법제정 배경

-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각종 시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특히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주부인턴제’ 등 예산 부담이 필요한 사업 추진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고 지자체의 예산 확보가 용이하도록 함
-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촉진을 위한 관련 정책 추진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

-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제17조의 2)의 일반적 규정을 구체화하는 법 제정 필요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은 국정과제인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의 추진과 관련하여 별도의 특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분야로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 주요 내용

- 법안의 적용대상을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으로 함(법 제2조)
-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의 책무 규정(법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 내용을 경력단절여성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계획의 수립 및 시행시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4조 및 제6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관련 실태조사, 유망직종 선정 진출 지원, 인턴 지원, 경력단절 예방 규정(법 제3,7,9,11,12조)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등 행정지원체계의 기능을 보다 명확히 규정(법 제14조)

###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추진배경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제정(법률 제9101호, 2008. 6. 5. 공포, 12. 6 시행)됨에 따라
  -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를 정하고,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법률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은 여성부·노동부 공동소관 법률로써, 두 부처가 공동으로 시행령안을 마련함

#### □ 추진경과

- 입안 : 2008. 8월
- 부처협의 : 2008. 8. 13 ~ 8. 23
- 입법예고 : 2008. 8. 28 ~ 9. 17
- 규제심사 : 2008. 10. 23
- 법제처 심사 : 2008. 10. 27 ~ 11. 18
- 차관회의 : 2008. 11. 20

## □ 제정 이유

- 법률의 위임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세부적 수립절차 규정 필요
- 법률의 위임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수요에 부합하는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센터의 주요기능 규정 필요
- 효과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및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경력단절 여성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을 정할 필요
- 지원센터 지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 신청 및 지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에서는 국고 및 지방비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바, 지원센터 운영의 적정성을 담보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운영계획 및 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하여 사업수행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는 조직, 인력, 시설 등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바, 센터의 명칭, 소재지, 인력사항 등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운영의 적절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저해할 수 있음
- 폐지 및 휴지 하고자 하는 센터에 예산이 지원되는 불합리한 사례를 예방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적절히 대처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폐지 및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운영과 관련된 여성부장관과 노동부 장관의 권한 중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업무의 기준을 정하고자 함

## □ 주요 내용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제2조~제3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추진에 기여함
  -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통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의 합리적 수행이 가능함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기능(제4조)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는 취업상담 및 정보제공, 직업교육 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보육지원 등 복지 서비스 제공 및 연계 기능을 수행
    -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는 출산·육아 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등의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취업지원서비스 기능 효율화, 전국적 통일성 및 규질성 확보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심의(제5조)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기준
  - 여성의 인력개발 및 취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조직기준)
  - 여성의 인력개발 및 취업지원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센터장 1명, 상담전담자 3명 등을 배치(인력기준)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상담실, 사무실 등의 여성 취업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시설기준)
- 지정신청 시 제출서류를 정하고,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지정한 때에는 지정서를 발급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 지원센터의 운영계획·운영실적 보고(제6조)

- 지원센터의 장은 해당연도 운영계획을 매년 1월31일까지, 운영현황 및 실적은 그 분기 다음날 말일까지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
-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비치
- 지원센터의 장은 다음의 경우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
  - 지원센터의 인력사항, 명칭, 소재지가 변경하는 경우
  - 지원센터를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운영계획 및 실적 등을 관리함으로써 센터의 운영의 효율성 도모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운영의 적절성을 담보하고 폐지 또는 휴지되는 시설이 있을 경우,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적절히 대처

○ 권한의 위임(제7조)

- 여성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보고·검사,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신청서의 접수,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계획·운영실적 보고의 접수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 운영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민원인의 편의 도모에 기여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 계획 수립 절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실태 조사내용,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의 기능 및 지정 절차 등을 주요 내용하고 있음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경력단절여성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여성부장관과 노동부가 공동으로 지정·운영하는 종합취업지원사업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센터 운영 등 일부 사업을 함께 수행할 여성부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제정함으로써, 정부정책의 부처간 벽을 허물고 협력

을 활성화하는 계기 마련

-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직업교육, 취업연계, 사후관리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센터의 기능과 지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센터의 투명한 운영을 확보하고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함
  - 신규 시설을 새로 설치하지 않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등 기존의 여성취업지원시설을 활용
- ※ '09년 50개소 지정, 2012년까지 100곳으로 확대, 특히 주부인턴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3개월간 보조금(월50만원)을 지급, 대상은 1,000명

## 4. 서울시 여성인력개발정책 과제

### □ 여성인력개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 정책 발굴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시책을 세우고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
  -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한 상담·정보·직업훈련·취업 및 복지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비영리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지정·운영
  - 직업훈련사업·인턴지원사업 등 여성취업제고를 위한 사업을 적극 실시함
- 서울시가 08년 12월에 발표한 『3040 여성일자리 지원대책』은 서울시의 30~40대 경력단절 여성들을 최우선적인 정책대상으로 삼고, 집중적인 취업지원 대책들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함
  - 다만 지원대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절차, 조직, 소요예산, 기간 등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 서울 여성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발굴 및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서울시의 경우 고학력 여성의 비율이 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고학력 여성 대상 일자리는 타지역 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서울시 대졸자 여성의 취업률은 '05년 66.7%에서 '06년 66.4%, '07년 65%로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이며, 30대 고학력여성의 노동시장 이탈률이 높아 여성 고급

인력의 활용이 저조함.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대상 사업의 적극적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함

- 경력단절 고학력여성의 취업의지를 높이고,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 사회적인 경력 없이 노동시장에 복귀 시, 좋은 일자리(decent)를 찾기 어려워 실망실업자가 될 수 있음. 자격증 취득이나 인턴쉽 등을 통해 개인의 경력을 개발 한 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함
  - 취업·창업 등 여성의 요구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와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단체와 조직을 연계하여 정확한 일자리를 찾아줄 수 있는 원스톱 체제를 구축해야함
  - 저소득층 여성취업을 위해 취업처 알선 뿐 아니라, 고용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함. 특히 한부모 가족이나 맞벌이로 인해 자녀를 돌 볼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하여 훈련시간 동안 자녀를 돌봐 줄 수 있는 보육연계를 반드시 고려해야함

## □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의 강화 필요. 서울시의 경우, 출산율의 저하로 보육시설 이용대상 아동수가 감소하나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공공보육 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함
  -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자발적 단시간 근로 등 근로형태의 다양화 필요

- 일 – 가정 양립 또는 가족친화정책 등은 사업주의 이해와 협력없이 는 실현가능성이 낮음. 사업주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중앙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센티브와는 다른 형태의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함
- 모성휴가와 육아휴직 정책의 활성화를 통한 육아휴직 및 가족 친화적 기업 환경 조성

## □ 서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검토

-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 할 것을 책무로 규정함에 따라, 서울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시 여성인력개발정책의 법제도적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음
- 조례 제정은 여성인력개발을 위한 시책과 조직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위한 예산 확보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문헌

-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진흥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2007. 10
-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3040서울시 여성일자리 정책설명회』, 2008. 12
- 노동부·여성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노동부·여성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2008. 8
- 노동부·여성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안), 2008. 8
- 노동부,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 2008. 4
- 노동부, 제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2008~2012), 2008. 7
- 여성부, 일본의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재취업 지원정책 관련 연수보고서, 2008. 8
- 장서영 등, 한국고용정보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 2007

[붙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대비표(법, 시행령, 시행규칙)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법률 제9101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153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여성부령 제3호, 노동부령 제312호)
<p>제1조(목적) 이 법은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p> <p>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제1조(목적) 이 영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법률 제9101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153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여성부령 제3호, 노동부령 제312호)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③ 사업주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p> <p>①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력단절여성등의 현황과 전망</li> <li>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주요 시책</li> <li>3.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③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여성정책조정회의(이하 “여성정책조정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제출)</p> <p>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법률 제9101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153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여성부령 제3호, 노동부령 제312호)
<p>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p> <p>③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p> <p>제6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여성부장관, 노동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제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지난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법률 제9101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153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여성부령 제3호, 노동부령 제312호)
<p>제7조(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① 여성부장관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p> <p>제8조(일자리창출 지원) 정부는 경력단절여성등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내용) 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여성부장관이 실시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에 관한 사항</li> <li>2. 경력단절여성등의 교육훈련 실태</li> <li>3.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실태</li> <li>4.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② 실태조사는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여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p>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법률 제9101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153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여성부령 제3호, 노동부령 제312호)
<p>제9조(유망직종 선정·지원)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을 선정하고 그 직종에 여성이 진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p> <p>제10조(직업교육훈련) ① 여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1조(인턴취업지원) ① 여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여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인턴취업지원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3조(여성인력개발기관 등) 법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관련시설</li> <li>2.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li> <li>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li> </ol>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법률 제9101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153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여성부령 제3호, 노동부령 제312호)
<p>제12조(경력단절 예방) 여성부장관은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직업의식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3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①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정보·취업 및 복지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기능)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취업상담 및 정보 제공</li> <li>2.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li> <li>3. 보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li> </ol> <p>제5조(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심의) ① 법 제3조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의 지정기준을 갖춰야 한다. ② 법 제3조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여성부와 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li> </ol>	<p>제4조(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p>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법률 제9101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153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여성부령 제3호, 노동부령 제312호)
	<p>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보유 현황 및 시설 현황</p> <p>3. 사업계획서</p> <p>4.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③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p> <p>④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센터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p> <p>제6조(지원센터의 운영계획·운영실적 등의 보고) ① 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운영계획을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을 반기(半期)별로 그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p> <p>④ 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원센터의 인력사항, 명칭,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센터 지정사항 변경신고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지원센터를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센터 폐지·휴지신고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법률 제9101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153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여성부령 제3호, 노동부령 제312호)
<p>제14조(보고·검사) ①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p>	<p>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p> <p>④ 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원센터의 인력사항, 명칭,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li> <li>2. 지원센터를 폐지 또는 휴지하려는 경우</li> </ol> <p>제7조(권한의 위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p>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법률 제9101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153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여성부령 제3호, 노동부령 제312호)
<p>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센터에 대한 보고·검사 등에 관한 권한</li> <li>2. 제5조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신청서의 접수</li> <li>3.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계획과 운영현황 및 실적 보고의 접수</li> </ol>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규칙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p>